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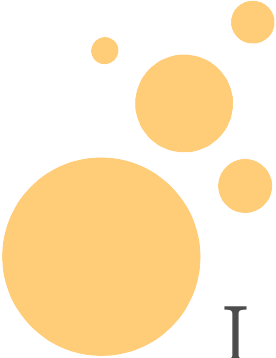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안내서

- 신고자 지원단체용 -

2020. 10.

- 목 차 -

I.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
1. 공익신고의 필요성	2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3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4
II. 공익신고 처리방법	6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7
2. 공익신고의 접수	18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28
4. 신고자 지원단체 유의사항	37
III.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45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46
2.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주요내용	50
IV.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53
V.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사례	64
VI. 참고	69
1. 이것만은 알아두자!	70
2.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71
3.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72
4.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95
5.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467개)	125
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164



I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의 필요성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I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 오염 등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조사기관, 수사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는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수단인 동시에,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 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2001년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의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에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민간부문의 부패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하였고,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구비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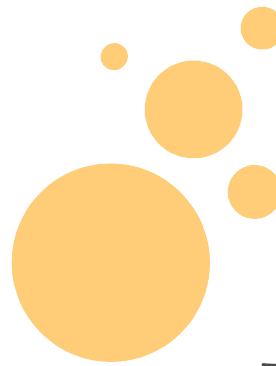
영국은 1989년, 168명의 사상자를 낳은 해상유전 사건 조사과정에서 안전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직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안전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식품의 위장 표시 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사건 등이 사업장 내부 근로자 등의 신고로 드러났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公益通報者 保護法)을 제정했다.

그 외에 미국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1986), 「연방공직 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WPA,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WPEA)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공익신고 처리방법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2. 공익신고의 접수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4. 신고자 지원단체 유의사항

개정 차수 (시행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시행 (11.9.30.)	• 대상법률: 180개 (법률 11개, 대통령령 169개) - 법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법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1차 (14.1.14.)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규정 -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 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고 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														
제2차 (16.1.25.)	• 대상법률: 279개 (99개 법률 추가) •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보상금은 내부신고자만 지급,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 •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및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														
제3차 (17.10.19.)	• 보호조치 및 보상제도 안내의무 신설 -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보상금·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의무규정 신설														
제4차 (18.5.1.)	• 공익신고 대상 분야 추가 - 기존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대상법률: 284개 (5개 법률 추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 보호조치 강화(법 제17조 및 제20조, 영 제17조의2)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법 제27조, 영 제27조)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법 제29조의2)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벌칙 강화(법 제30조) <table><tr><th>위 반 행 위</th><th>개 정 전</th><th>개 정 후</th></tr><tr><td>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td><td>3년 / 3천만원</td><td>5년 / 5천만원</td></tr><tr><td>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td><td>2년 / 2천만원</td><td>3년 / 3천만원</td></tr><tr><td>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td><td>1년 / 1천만원</td><td>2년 / 2천만원</td></tr></table>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영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위 반 행 위	개 정 전	개 정 후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위 반 행 위	개 정 전	개 정 후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제5차 (18.10.18.)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보호·지원 신청 등) 본인 동의 하에 열람 •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21조의2) <table><tr><th>상한금액</th><th>부과횟수</th><th>부과기한</th></tr><tr><td>2천만원 → 3천만원</td><td>연 2회 이내(변동없음)</td><td>2년 이내 → 이행시까지</td></tr></table>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 → 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 이행시까지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 → 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 이내 → 이행시까지													
제6차 (20.11.20.)	• 대상법률: 467개 (182개 법률 신규 추가) : 467개 = 기존 284개+삭제된 법률 3개+분법된 법률 4개+신규 추가된 법률 182개														

II. 공익신고 처리방법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가. 공익침해행위

1)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으며,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284개(20.11.20.부터 467개로 확대) 법률을 위반하여 ③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등 법률 위반 시 제재수위도 높아 사전에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적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공익신고의 대상을 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의 입법 목적 및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

-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포괄적 정의 규정
 - 범죄행위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위반행위 및 위반의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행위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개인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위험행위 또는 환경 파괴행위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 개별적 열거규정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별표로 열거한 법률(470개 법률, '19.7.1. 현재)이 규정하는 죄의 범죄사실(법률에 의거한 명령위반 포함)

2) 공익침해행위의 요건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6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 최근 법원은 실제 해당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상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주요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판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2억원 이하의 과징금) ■ 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을 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건축물 철거·폐쇄 등), 제3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 ☞ 「소비자기본법」 제86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21조(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하는 행위 ☞ 「방송법」 제108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재산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현행 대상법률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추가 대상법률 (20.11.20. 이후)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공익신고

1)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란 위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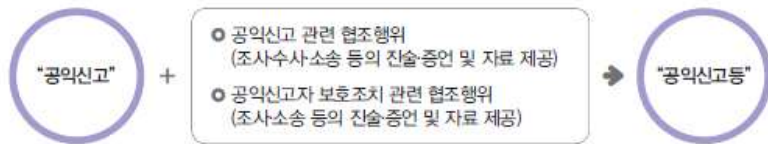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미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관련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공익신고의 형태 >

- 신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진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소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발 :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제보 :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수사의 단서 제공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2) 공익신고등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소송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이라고 한다.



< 공익신고등(예시) >

- 공익신고 관련 협조행위
 - 식품회사의 유해물질 포함 농수산물 유통 등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식품회사 근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협조하여 식품회사의 불법행위를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
 - 염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을 신고한 후 해고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인사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의 지시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적격을 내부자 등으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이익, 공정거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부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이 제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자로 신고주체를 한정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색출이 용이하고 유추 가능성이 높아져 신고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며,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보호대상이 되고, 내부 신고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별도로 내부 공익신고자를 정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였다.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법 제2조제7호가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법 제2조제7호나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1호)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2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3호가목)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시행령 제3조의2제3호나목)
-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조의2제4호)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와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 내부 공익신고자 판단 시 고려사항 >

- ① **근무관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간의 장단, 계속성을 불문하고 피신고자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근무관계의 신고자도 포함,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맺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인턴직원 등도 포함됨
- ② **계약관계** :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갑을관계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 구매자, 일반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인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되며, 계약에 따른 직접 업무 수행자에 한정되지 않음
- ③ **사실상 영향력 관계** : △피신고자와 신고자가 직접 고용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신고자가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피신고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는 계열회사 관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의 직원 등
- ④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지도, 관리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 지도, 관리 감독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라.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이라고 한다. 법 제6조에서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서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 2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다.

공익신고 기관 (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중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 공공단체의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단체라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익신고 기관별 공익신고(예시)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의 대표자
 - 식품회사의 대표자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납품 및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 조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
- 수사기관
 - 지방경찰관서에 염색업체의 공장폐수 방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신고
- 국회의원
 - 국회의원에게 철도차량의 정비기준 위반 등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를 신고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시설의 손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수사의 착수,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공익신고의 접수

가.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나. 접수시 확인 사항

1)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여부 및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인적 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 신고로 접수 가능하다.

2)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①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284개 법률(‘20.11.20.부터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②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공익신고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공익신고자등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 보상 및 구조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에 따라 해당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불이익조치자에게 전환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다.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법 제23조)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3) 책임의 감면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 등에 의해 공익침해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형벌, 징계 뿐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4)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5)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익명·가명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부정목적 신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마. 비실명 대리신고

1) 개요

2018. 4. 17. 법률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18.10.18. 시행).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법 제8조),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

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상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할 수 있는데, 이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신분보호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대리신고 서류 관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봉투에 넣고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보관(「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 자료’로 분류하고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관리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2019. 7. 26.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한 자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자문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도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하였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서 양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8 (신고자보호), 7739, 7742, 7745, 7748(신고자보상)

3.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가. 개요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졌는 지 여부에 따라 조사·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①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수사기관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수사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받거나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재이 첩’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수사기관에서 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 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공공단체,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이송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이송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익신고 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

1)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

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공익신고 종결 사유(법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 2013. 5. 16.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32532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8조제2호,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신고내용의 수사

수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 등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입건·송치·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발생하는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진행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공익신고에 관한 수사를 종료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사·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사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제10조(영상물 촬영)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 가능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4) 재조사·재수사 등 후속조치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2차 개정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후속 조치의 필요성 >

- 기존 미달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한 공익신고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당 농산물의 회수 또는 친환경 인증 표시 삭제 등 추가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없었음
- 편육 제품 제조중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공익신고를 이첩하자 조사기관에서 해당 공장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추가 조치 사항(법 제9조제5항)

-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송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권이 신설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재조사·재수사 요구 사유 〉

-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 신고사항에 대해 재조사·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경우
- 조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조사기관의 담당자가 그 직무를 명백히 해태하여 조사·수사를 진행한 경우
- 그 밖에 재조사·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 공익신고 이송·재이첩(조사·수사기관)

1) 공익신고의 이송

조사·수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바로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6항).

〈 공익신고 이송(예시) 〉

-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이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신고를 함
- ⇒ 공익신고를 접수한 ○○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공익신고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신고내용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을 확인
- ⇒ ○○지방국토관리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 A씨에게 통지함

다만,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적시에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시행령 제13조)

-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공익신고의 재이첩

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라. 공익신고의 이송(공공단체, 국회의원)

1) 이송기관의 결정

공익신고를 받은 공공단체나 국회의원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을 이송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 이송 기관의 결정 >

1.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20.11.20.부터 467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
2. 공익신고 대상법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3.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따라 이송할 기관을 결정
 -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이송
 - 수사기관 : 징역, 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신고 이송
 -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이송

2) 공익신고 이송 및 통지

공공단체 또는 국회의원은 이송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이송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신고자 신분 비공개 사건의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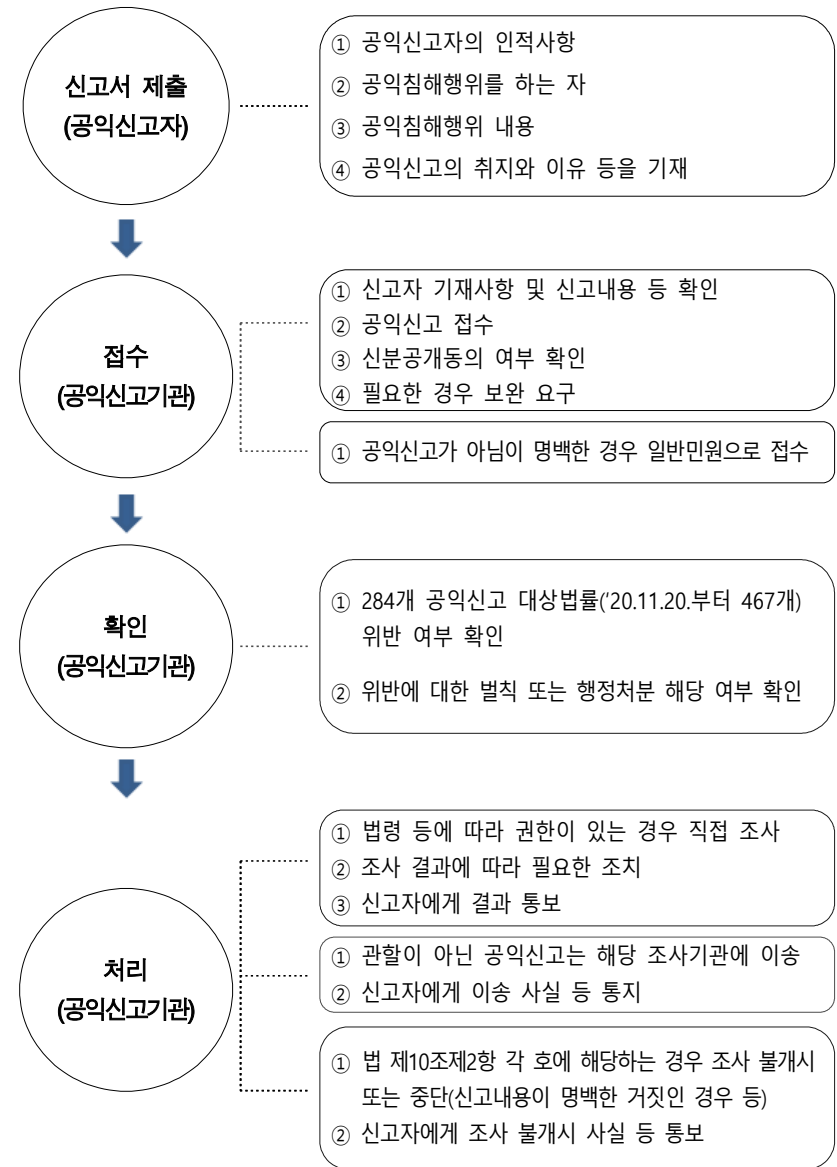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이송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특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이송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익명처리 이송 시 유의사항 >

- 신고서에 기재된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익명처리
-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의 직업, 소속 기업 및 담당 업무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

★ 공익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



4. 신고자 지원단체 유의사항

가. 신고자 상담 관련 유의사항

공익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은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또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변으로부터 조언이나 조력을 받고 싶어 한다.

신고자 지원단체는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성하여 변호사 상담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 등 신고자 지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국회의원 등 공익신고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 기관이 아닌 신고자 지원단체는 공익신고를 직접적으로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 제12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비밀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

하고 있으며(법 제10조제5항), 이 법에서 정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보장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조제1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제5항).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신고자 지원단체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한 조언 또는 조력 등의 지원 업무를 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비밀보장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신고 상담 시 확인사항(예시) >

- 다수 신고인 동시 방문 시 분리 상담
- 신고자 상담 중 다른 용무 방문자와의 접촉 차단
-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유선으로 신고내용 확인 요청시 본인여부 확인
-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확인
- 사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연락 최소화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확인
- 보호·보상제도, 처리 절차 등 안내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자 지원단체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무실 등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p. 2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참조)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공익신고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 상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자료가 필요한 각 단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청각 교육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설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신고자 보호·보상
-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http://edu.acrc.go.kr>) - 청렴교육자료 - 시청각자료

나.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유의사항

2018년 10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실명신고 원칙을 유지

하면서도 익명신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외부 공익신고자도 이용 가능하다(법 제8조의2).

특히, 2019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문변호사 이외의 지원단체 소속 또는 일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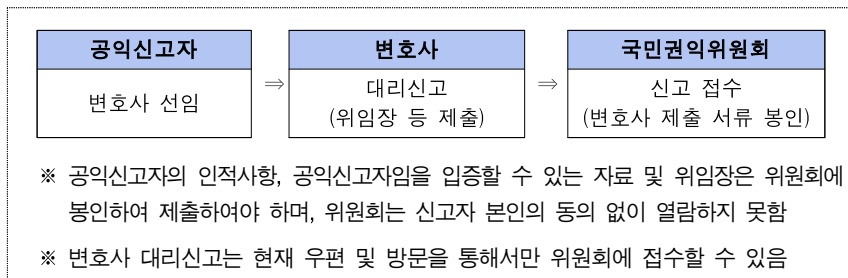
비용 NO!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공익신고자 를 위해 권익위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중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한 상담대리신고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수당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 (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②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③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④ 피신고자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 받을 수 있는 자

따라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지원단체 소속 또는 일반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원단체 소속 또는 일반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살펴보면,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 위임장,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 등은 봉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관하며, 이때 봉인·보관하는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변호사는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 보상금 신청 등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신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 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연락처
: 신고자보호과(044-200-7772~8), 신고자보상과(044-200-7739, 7742, 7745, 7748)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대리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신고사건 처리 및 언론 인터뷰 과정 등에서 신고자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대리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달리 내부 공익신고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먼저,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문변호사단 중 한 명을 선택(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한 후 자문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한다.

* 자문변호사 명단 확인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처음 오셨나요?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페이지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클릭(성명, 지역, 소속, 전자우편 주소 등 공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추후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위임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신고자와 위임계약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 범위에 따라 신고서, 증거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신고서 제출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의 대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의 경우, 업무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에 한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로부터 「공익신

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문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 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연락처
: 신고자보호과(044-200-7772~8), 신고자보상과(044-200-7739, 7742, 7745, 7748)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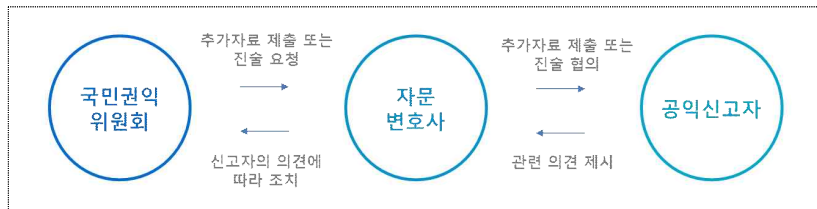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신고사건 처리 및 언론 인터뷰 과정 등에서 신고자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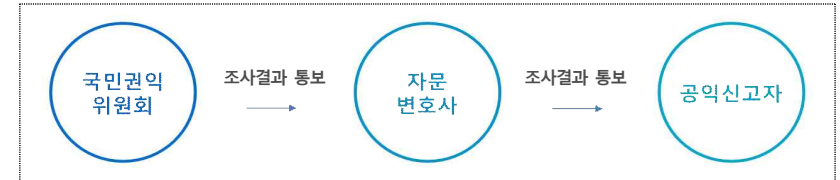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 공익신고 조사결과 통보 단계



다. 신고창구 위·수탁운영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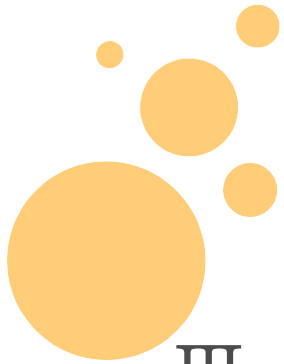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기업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위탁 운영하면서 신고방법을 익명신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법상 공익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익명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법 제8조), 익명신고로 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부패·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익명신고의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누구인지 사후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신고자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익명신고창구 수탁·운영 시에도 시스템 취약으로 인해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Ⅲ.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2.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의 주요내용

Ⅲ.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1. 비밀보장

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금지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2. 신변보호

공익신고자(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3. 책임감면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 **형 의 감 경 · 면 제**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 **징 계 및 행정처분의 감 경 · 면 제**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징계·행정처분하는 경우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 **직 무 상 비 밀 준 수 의 무 배 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4.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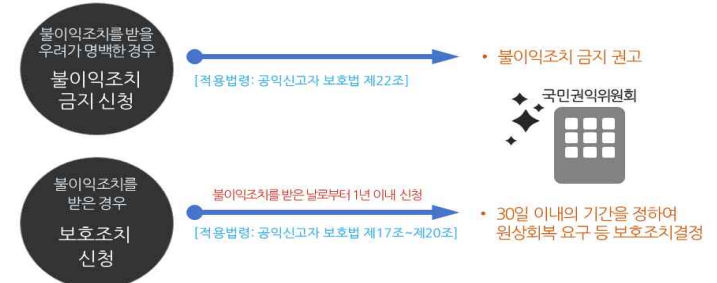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5.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요구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협조자)를 지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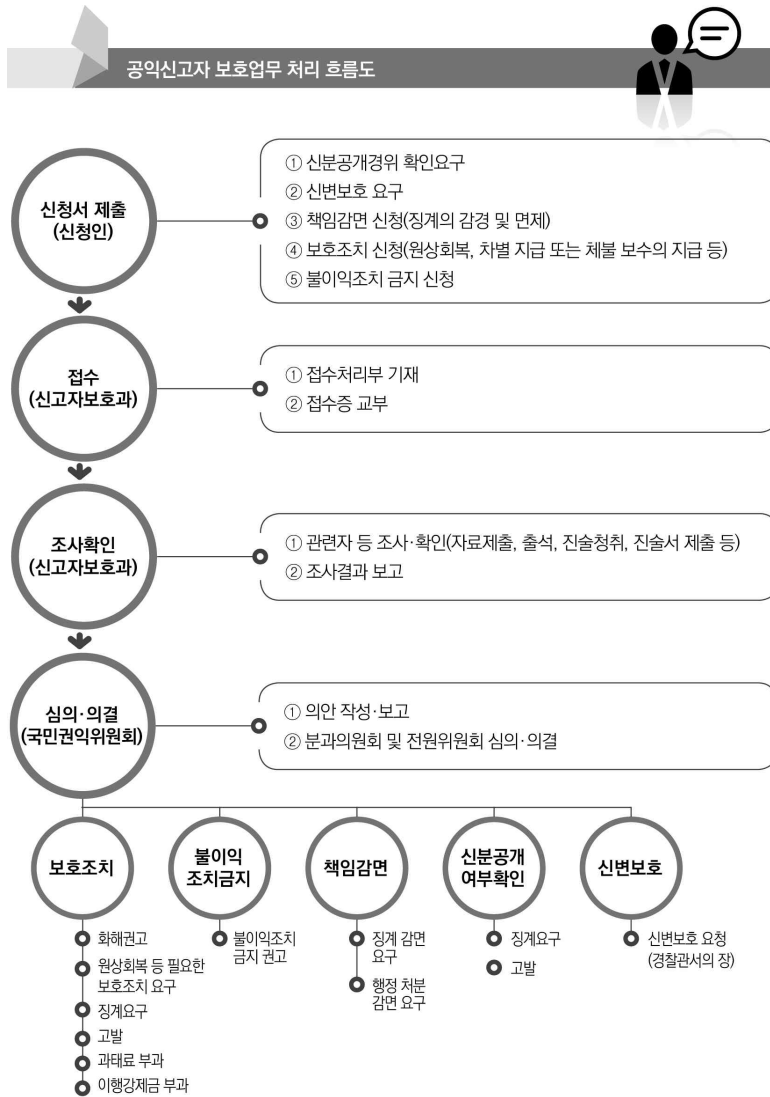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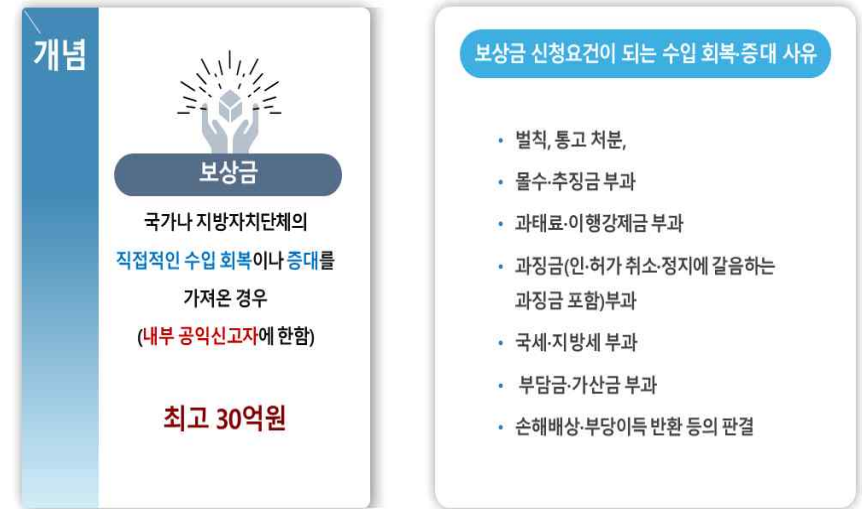
▶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 조치 9가지

불이익 조치 유형(법 제2조제6호)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기준: 2년/2천만원)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징역/2천만원이하벌금 (기준: 1년/1천만원)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권고사항 (형식조항 없음)



2.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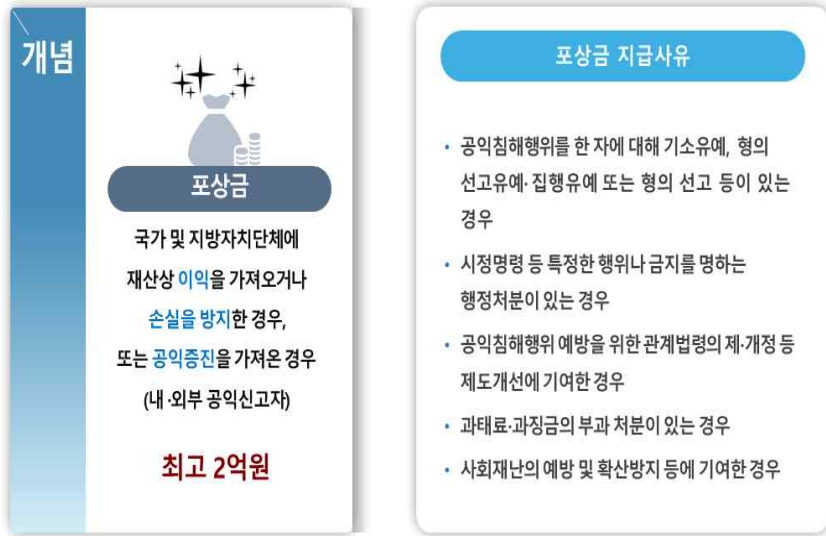
▶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제도 1. 보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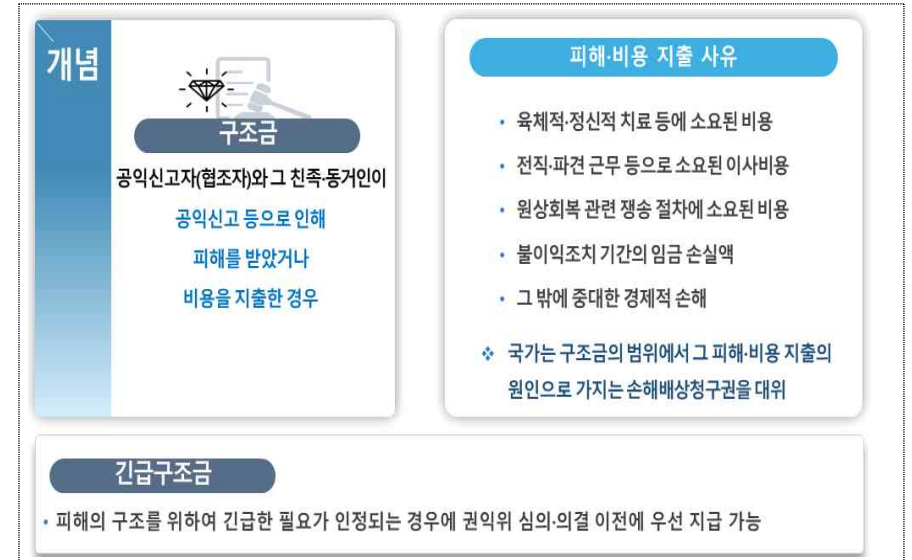
★ 공익신고자 보상금 처리 흐름도 ★



▶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제도 2. 포상금



▶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제도 2. 구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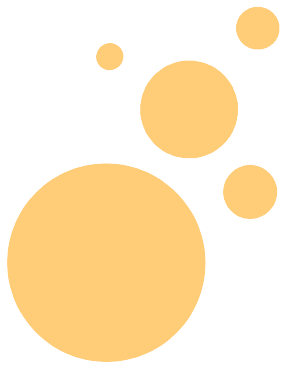


★ 공익신고자 포상금 처리 흐름도 ★



★ 공익신고자 구조금 처리 흐름도 ★





V.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

V.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20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3만 7천 건을 넘었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도 총 853만 건에 이르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20. 11. 20.부터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기존 284개→467개로 확대)되어 공익신고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 건강 분야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 의사 273명 포함 305명 형사입건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주유권 또는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
- ▶ **마약류 관리 부실 :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
 - (신고내용) ○○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마약류 접수대장과 실제 재고량이 전월 사용량의 3%이상 차이가 발생
 - (관련법률)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44조, 제69조
-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 기소**
 - (신고내용)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 (사)○○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신고자가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 기소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 ○○구에 타인의 명의로 ○○비뇨기과를 다시 개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시 ○○요양병원의 개설자인데, △△시 ○○구 ○○비뇨기과의 개설자 또는 진료·대진 의사가 아님에도 위 비뇨기과에서 진료 중인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의료법」 제4조, 제66조, 제87조

▶ 제약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 :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인 제약회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하였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제47조

▶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된장, 고추장을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2조, 제95조

▶ 국가필수예방 접종백신(영유아용) 불법 보관 행위 : 업무정지(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

- (신고내용) 의약품 도매상인 피신고자는 ○○인증 보과업체에 의약품 을 위탁 보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수개월간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와 건물 내 빈공간에 보관하였다고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불법 보관사실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47조

2. 안전 분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등)

▶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 재시공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건설(주)가 ○○신항 도로공사 중 ○○시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일부 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및 사석으로 배수로를 마감한 사실, 배수로 규격을 일부 불량하게 시공한 사실, 맨홀을 설치하면서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직접선임 위반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사업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어 시설물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한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당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시설물관리 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제15조, 제41조

▶ KTX 낙동강 철교 부실시공 : 재시공

- (신고내용) KTX 낙동강 철도교량 하부 교각이 유수에 깎이는 것을 방지하는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11년)
- (조사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확인
- (관련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기소**

- (신고내용) ㈜○○건설이 ㈜△△건설과 ㈜▽▽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사용하여 ○○시가 발주한 '○○-○○간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건설사간 건설업 등록증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 **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안전 확인신고 등이 없는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25조

▶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방법 위반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액화염소가스를 허가받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충전용기를 보관하고 있고, 지하저장탱크 이송관 중간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을 통해 충전용기에 직접 충전하고 있음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3조

▶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 미인증 안전난간 제조.양도.대여.사용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제조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4, 제67조의2

▶ **오피스텔 부설시공 : 경고 및 보강공사 실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속이고, 부설시공을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설계도면과 달리 사용한 사실 및 일부 철근의 이음새를 감리가 확인 없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 **산업재해 은폐 의혹 : 과태료(700만원)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종아리 근육 등이 손상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사고 목표관리 등을 이유로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치료비를 소속 직원으로부터 일정 금액 건어서 처리하였다고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산업재해 은폐 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700만원) 처분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3.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 **폐 콘크리트 불법 매립 :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사업장 내 세륜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승인없이 공장 주변에 매립(약 10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 **유해가스 배출 :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케미칼이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 **석탄재 및 탈황석고 방치 :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석탄재를 방치한
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서 석탄재 및 탈황석고를 적시에 매립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31호

▶ **폐수 무단 방류 : 시정지시, 조업정지 명령, 과태료,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터널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무제품제조사업장 환경오염행위 :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공업(주)가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고무제품제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성형시
설을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방
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9조, 제90조, 제94조

▶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 시정조치명령 및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댐 잡목제거 벌목작업 중 발생한 임목폐
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목폐기물을 처리
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임목폐기물 약 15톤을 ○○댐 상류부에 매립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 **농업회사법인의 불법농지거래 :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농업회사법인 ○○(주)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소유
할 의사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농지 매입일로부터 최소 57일에서 최대 104일 사이에 ○○
등 25명에게 농지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농지법」 제3조, 제6조, 제59조

▶ **제련소 유독가스 유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노후된 공장 시설물을 방치하여 유독가스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제련소 공장 내 가스배관의 연결이음 부분이 부식·마모되어
유독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응축수 무단 방류 의혹 :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잔재물(응축수)을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하수도로 방류하였다는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경찰청 수사결과, 신고내용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78조

4. 소비자 이익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상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유사수신행위 : 기소**

- (신고내용) ○○시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등유 불법판매 : 사업정지 6개월**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매일 새벽 덤프트럭 10여대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49조

▶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운영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초음파 식기세척기, 머리염색약 등의 제품을 다단계(후원방문)로 판매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8조

▶ **PVC매트 제조회사의 허위·과대광고 : 자진리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의혹이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 : 개선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자의 보험관리사들이 기망 내지 회유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동일 유형의 변액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보험의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민원인 대부분이 추가납입기능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해당 기능에 대한 안내 절차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보험업법」 제97조

▶ **대형마트의 경품 지급관련 개인정보 과다수집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2만원 상품권 당첨자 200명에게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였다고 공익신고('17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대부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대부업자는 광고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대부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주)○○대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시 대부업 등록관청인 ○○시청(지역경제과)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위반 : 경고**

- (신고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과 대금 환불 및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청약의 철회 및 해제, 대금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제공없이 통신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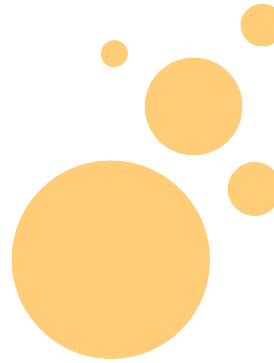
-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45조

▶ **허위의 인증 표시·광고 : 경고**

- (신고내용) 수처리 약품을 ○○시에 납품하면서 해당 제품이 ISO9007, ISO4001 인증 및 Q마크 인증 획득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해당 인증서는 위·변조된 것이므로 허위 표시·광고라는 공익신고('19년)

-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표시·광고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

-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대리점 가격담합 지시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인이 자사 대리점에 가격담합을 지시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사 대리점에 대해 제품 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 지정 등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불공정 및 산업스파이 거래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국가산업인 ○○ 관련 기밀자료를 외국회사에 넘겨주었다는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외국회사에 우리나라 ○○ 제조업체의 구매품명, 구매수량, 구매단가, 향후 필요수량 등을 넘긴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부적격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담합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담합했다는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평가 부적격자인 계열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요금 가격담합 : 경고

- (신고내용) ○○시 용달화물자동차협회가 회원사인 구성사업자 및 신규 등록 운송사업자 등의 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배포하였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가격담합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운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V.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사례

VI.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사례

1.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한 공익신고자를 구제한 사례는 총 103건이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은폐 사실 공익신고자 : 화해성립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후, 피신고자가 대기발령 및 전보 조치 등을 실시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 조서를 작성, 조서내용에 합의함
- (위원회 결정)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

▶ ○○금융회사 임원의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결정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이 불법 대출을 지시한 행위를 검찰에 신고한 후, 이사장이 신고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정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징계, 정직, 감봉,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무기한 정직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 : 원상회복 결정

- (신청내용) 피신청인 회사와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있던 파견업체에 소속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OO청에 신고함.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파견계약 해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피신청인이 파견업체에 신청인의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휴가 마지막 날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노인 학대 공익신고자 :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를 불이행한 피신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내용)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가 직원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한 후 재단 이사장인 피신고인이 신고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보직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보직에서 해임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신고인이 보호조치결정서 송달 30일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결정

▶ 입찰담합 자진신고 사업자 :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를 불이행한 피신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내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함.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책임감면을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보직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보직에서 해임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신고인이 보호조치결정서 송달 30일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결정

2. 공익신고자 지원사례(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6,193건에 대해 총 83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회복액은 총 1,134억 8,200만원(수입회복액의 7.4% 보상금 지급)에 이른다.

공익신고 포상금은 제도를 도입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42건에 대해 총 4억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익신고 구조금은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17건에 대해 총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재판매 등 신고

- (신고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피신고업체가 관내 사업장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불법 압축 후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남은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
- (조사결과) 피신고업체에 부당이득금 2,900여만원이 부과·징수
- (결정결과) 신고인에게 5,877천원의 보상금 지급

▶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관련 신고

- (신고내용) ○○구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수년간 항생제 등 의약품 등을 임의로 묶게 변경조제 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에 신고
-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대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의 선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약사면허 취소처분이 있었음
- (결정결과) 공익증진을 가져왔음이 인정되어 신고인에게 10,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 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신고

- (신고내용) 피신고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위조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음을 ○○위원회에 신고
- (구조금 신청) ○○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신고업체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 (결정결과)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하게 된 무고 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1,500천원의 구조금 지급

VI. 참 고

1. 이것만은 알아두자!
2.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3.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4.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5.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467개)
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20.11.20.부터 467개 법률)
▶ 어디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소관 행정감독기관) 공사 등 공공 단체 국회의원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신고자 보호수단은 무엇인가요?	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조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9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파면·해임·해고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징계·정직·감봉 강등·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전보·전근·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교육,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취업 자격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인허가 등의 취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 문의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 044-200-7752(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신고 사건 접수 : 044-200-7123(심사기획과) 공익신고자 보호 : 044-200-7772-7780(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 044-200-7739-7748(신고자보상과)

참고2.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비교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근거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20.11.20.부터 284개⇒ 467개 확대
신고 기관	·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보호 관련 규정 준용	· 권익위, 수사기관 · 소관 행정·감독기관(조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분상·인사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신분보장(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화해권고·이행강제금 제도 · 신분보호 · 신고자 책임감면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 구조금 제도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징벌적 손해배상(3배이내)
신고자 보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권익위 신고자(내·외부) · 상한 : 30억원	· 대상 : 전 공익신고기관 내부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원
신고자 포상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권익위 재량) · 대상 : 누구든지 · 상한 : 2억원	

참고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2.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3. 몇 년 지난 공익침해행위도 신고할 수 있나요?
4. '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467개로 확대되는데, 그 이전에 발생된 신규 추가 대상법률의 위반행위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5.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7. 기업 내 윤리규정(윤리규범, 윤리헌장, 행동준칙,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 위반을 신고한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되나요?
8.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9.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10.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나요?
11.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어디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요?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2.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13.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4.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15.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16.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의미하나요?
17.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회사에서 진급누락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시켜 주나요?
18.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나요?
19.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20.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21.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22.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23.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4.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25. 보호조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26.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나요?
27.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28. 해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9.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30.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31.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의혹이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신고자가 피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32.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증언 등 협조를 하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33.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34.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믿고 신고했을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 조치'가 가능하나요?
35.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도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나요?
36.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7.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8. 내부 공익신고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하나요?
39. 외부신고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40.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나요?
41.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42.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43.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44.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45.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2호).

2.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법률 284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20.11.20. 이후부터는 신고대상 법률이 467개로 확대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20.11.20. 이후 신규 추가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공익침해행위입니다.

예컨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20.11.20. 이후) 등은 모두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및 주요 위반유형은 참고자료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분야	공익침해행위 유형
국민의 건강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 「의료법」 위반
국민의 안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등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공정한 경쟁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소비자이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 「산업표준화법」 위반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3. 몇 년 지난 공익침해행위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에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467개로 확대되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신규 추가 대상법률의 위반행위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니었으나 '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되는 경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20.11.20. 이후 신고하면, 공익신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호·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에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효의 도과여부는 해당 위반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확인될 사안 이므로,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선은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 11. 20.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공개정보 업무의 목적 이용·누설하는 행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5.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대상 및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익신고는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기업의 대표자 등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패신고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국의 법률체계 및 제도 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비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범죄의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공익신고자든 부패신고자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 vs. 부패신고】

구분	공익신고	부패신고
근거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20.11.20.부터 284개⇒467개 확대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기관	· 권익위, 수사기관 · 소관 행정·감독기관(조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회·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보호 관련 규정 준용

6.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①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가 284개('20.11.20. 이후 467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기업 내 윤리규정(윤리규범, 윤리헌장, 행동준칙,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 위반을 신고한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되나요?

만약 기업 내 윤리규정 위반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위반 사항이 동일하여 이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법률상 공익신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기업 내 윤리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이외에도 복무기준, 행동기준 등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천기준 위반을 신고한 경우 현행법상의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 해당 기업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기업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감면 등)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시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신고자의 이름, 공익침해행위 내용, 증거 등)을 정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 비밀 뿐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비밀 누설을 우려하여 익명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신고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 따라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변호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신고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

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되어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법 제8조의2).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 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어디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요?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목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단 목록을 확인하고 소속 지역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를 1명을 지정한 뒤, 해당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 신청을 접수 받은 자문변호사는 ①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출, ②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자료 제출,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④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리 등,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기업의 비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84개(‘20.11.20. 이후 46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제3,4항).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는 경우에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법 제14조 제5항).

13.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이 공익침해행위를 하여 신고대상이 되었을 경우,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14조 제4항).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4.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기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15.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2항).

16.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의미하나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7.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회사에서 진급누락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시켜 주나요?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와 인사상 징계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공익신고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징계, 감봉 등을 받은 이유가 공익신고 때문이라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봉 등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공익신고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8.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공개·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법 제30조제1항).

예컨대, 외부 압력에 의해 신고내용을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9.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행위자(기업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법 제30조의2).

20.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또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21.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식적·정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 모두 불이익 조치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동료 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 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법 제2조제6호).

22.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제3항).

23.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신고자나 협조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5. 보호조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기관·단체·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진술 청취·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26.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나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할 때까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

27.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도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0조의2).

28. 해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1항).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법 제22조제3항).

29. 본인이 관여한 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호, 신분 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에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1.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의혹이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신고자가 피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①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②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제4항).

32.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증언 등 협조를 하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3.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언론에 제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이 인터넷상 기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익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4.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믿고 신고했을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가 가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는 막연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예. 「형법」상 사기나 무고에 대한 신고 등)를 신고한 경우까지 특별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① 제20조의2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만 제2조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해석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②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5.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도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나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충분한 정보를 고지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을 해고에 이르게 한 불이익조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6.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7.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신고가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면서 영세업소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내부 공익신고자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38. 내부 공익신고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교육·훈련 중인 자 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교육·훈련했던 자도 포함하고,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자도 포함합니다(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제2).

39. 외부신고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시민과 같은 외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는 행정력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행정 감시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위원회 직권으로 또는 공익신고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0.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 중 어느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1.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①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②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④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⑤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3.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협조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법 제27조).

44.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에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5.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참고4.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11.20.] [법률 제17300호, 2020.5.19.,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1.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벌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16. 1. 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	

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조사·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제조사·제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조사·제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제조사·제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

	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
--	---

	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	---

	나 수사기관에 제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익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익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익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사·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익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제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정보의 범위, 보유·이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정보 중 보환이 필요하면 그 자료·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보환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30.>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중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4. 30.>]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 4.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8.]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정금의 부과 3. 파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 1. 국제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2.>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2., 2018. 4. 30.>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2.> ④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9. 2.>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正本(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

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 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 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 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 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 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 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 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 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 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 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 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공익신 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 1. 22.>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 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 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 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 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 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 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 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 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 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 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 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 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 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 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 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 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 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	---

	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재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3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재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4. 9. 2.>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30.>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18. 4. 30.> 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	

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5장 보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 8.]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22.>
부칙 <제10472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65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30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198호, 2011. 9. 30.>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5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964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65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023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이익조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00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97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뉴스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생략 부칙 <제25300호, 2014.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2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86호, 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34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
---	--

	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93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9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39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

참고5.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467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강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	신규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신고·인가 없이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수행 방해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관련 사항 허위 보고	신규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 불이행 • 가정폭력 사건 관계자의 비밀누설	신규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 농장식별정보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7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신규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및 토지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철거·이전 불이행	신규
11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이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 행위 •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 위반	신규
13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 •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행위 • 사업주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16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운영 등	
17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터널·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18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	
20	「건축물관리법」	안전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	신규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 •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	
22	「건축법」	안전	• 부실하게 건축물을 착공하여 하자담보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는 행위	
23	「건축사법」	안전	•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24	「검역법」	건강	•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 격리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성을 조장	
26	「결핵예방법」	건강	•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미보고 • 의료기관·학교 등의 결핵진단(건강검진 포함) 미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주	신규
27	「경륜·경정법」	공정한 경쟁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 •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8	「경비업법」	안전	•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경찰장비의 과도한 사용 • 증표제시, 이유설명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심검문	신규
30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대여 • 정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거래용 저울의 조작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소비자 이익	• 규정을 위반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표시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 고압가스시설 손괴 및 개조 또는 가스안전시설 기준 위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	
33	「고용보험법」	소비자 이익	• 불이익처우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수령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	신규
35	「골재채취법」	환경	• 금지구역 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의 부정한 청탁 또는 금품 수수 • 공기업·준정부기구의 회계담당자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신규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신규
39	「공공주택 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신규 (분법)
40	「공동주택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규 (분법)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42	「공연법」	안전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 안전검사 미실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려가게 하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신규
45	「공인중개사법」	소비자 이익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 •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 제공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제공·모집 •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무허가 거래 •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금융업무 취급	신규
47	「공중위생관리법」	건강	•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대규모 시설의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 변기 과소 설치 • 대규모 시설의 공중화장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변기 미설치 • 공중화장실에 영리목적의 광고물 표시·설치	신규
49	「공항시설법」	안전	•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제지(制止)나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 • 활주로, 유도로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규 (분법)
50	「관광진흥법」	소비자 이익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	
51	「광산안전법」	안전	•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 불합격된 오염수정정화시설의 사용	
53	「교통안전법」	안전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 •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55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 이익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역을 알선한 사람	
56	「국가보안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합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	신규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신규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환포로 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	신규
59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60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지 않는 행위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신규
62	「국민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신규
63	「국민영양관리법」	건강	•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 영양사 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	
64	「국민체육진흥법」	공정한 경쟁	• 부정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단체 임직원, 속입수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 국유림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외 임산물을 취득	
66	「국유재산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	신규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한 경쟁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위험해역 등에 진입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등 및 선원등 • 무기반입 등 사실을 선박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등	신규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탁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등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독물 또는 유독무기,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규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	신규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위반	신규
74	「군사기밀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한 사람	신규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	신규
76	「군형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수괴) •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 •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	신규
77	「케도운송법」	안전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케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케도를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나 안전검사를 수행	
78	「귀속재산처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 •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	신규
79	「근로복지기본법」	소비자 이익	•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	
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기능대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신규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익	•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신규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공개정보 업무의 목적 이용·누설 • 금융위 승인 없이 주식소유 •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미보고·허위보고	신규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금융거래정보의 타인제공 또는 누설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목적의 타인실명 금융거래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85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 이익	•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 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당해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 위반행위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한 자 등 •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신규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 급경사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미 실시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미 실시	
88	「기계설비법」	안전	•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작성의무 위반/ 점검기록 보존의무 위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신규
89	「기초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	신규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	• 어선의 안전점검 미 실시, 낚시어선업자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행위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신규
93	「내수면어업법」	환경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노숙인 등을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	신규
95	「노인복지법」	건강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	• 지정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	
97	「노후준비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허가 없이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업무를 수행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건강	•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등록·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 •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조리·판매·제공	
101	「농약관리법」	건강	•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재를 수출입 • 판매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103	「농어촌정비법」	안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안전	•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의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행위 •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는 행위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승인 없이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 반출	신규
106	「농지법」	환경	• 건축물의 건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108	「담배사업법」	건강	• 허가 받지 않은 담배 제조 •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 수입 • 제조업자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소매자에게 금품 제공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 등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납품업자들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 •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 • 납품이나 매장임차의 기회를 제한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의무 등 위반/조치명령 불이행	신규
11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본사에서 대리점에 상품·용역 구입 강제 • 본사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	신규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수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 법령을 위반한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수	
115	「대의무법」	소비자 이익	• 전락물자들의 국제적 확산을 피할 목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락물자를 수출 •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교통카드데이터를 위·변조/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신규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취득/허가 없이 건축 등/승인 없이 사업 시행	신규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댐의 저수 방류로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이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 등	
119	「도로교통법」	안전	• 신호기 무단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	
120	「도로법」	안전	• 고속도로나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 • 고속도로에서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	
121	「도선법」	안전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시공자·설계자 등의 선정에 관한 금품수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임원 선출 관련 금품수수 •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매도·매수	신규
123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 도시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미 실시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취득·허가 내용 위반/명령 또는 처분 위반	신규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 이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 • 업무정지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 해당 등	신규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지정받는 경우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저해	
127	「도시철도법」	안전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의 운행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 독도 등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폐기물 투기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함 • 금융정보 등 사용·제공·누설 • 주민등록정부, 가족관계사항 등 자료·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제공·누설	신규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131	「동물보호법」	안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 디엔에이정보 거짓작성·변경 • 시료 인멸·은닉·손상 등 효용 해함	신규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 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134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 이익	•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등	
135	「먹는물관리법」	건강	•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거나 무허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	
136	「모자보건법」	건강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판매·유통 • 규격·품질기준 미달 목재제품의 판매·유통 • 목재생산업 미등록자의 목재생산업 경영	신규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 무인도서 등 보전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비자 이익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하는 행위	
140	「문화재보호법」	환경	• 천연기념물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 등을 포획·반출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미등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경영 • 성명·상호의 타인사용 또는 등록증 대여 • 물류단지 안에서 허가없이 건축, 공작물설치, 물건 적치	신규
143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 이익	•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하는 행위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 공공하수도 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규모 및 위치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45	「물환경보전법」	환경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건설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	신규
14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가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규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 임대여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 임대여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149	「민방위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규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 운영,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재화 등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경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경우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신규
154	「방송법」	소비자 이익	•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 규제·간섭 • 유료방송사업자의 약관변경 미통지 • 광고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방송 광고	신규
155	「방위사업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행위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	신규
159	「병역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신규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신규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 허가 없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행위 등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의료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63	「보안관찰법」	안전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경우	신규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신규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안전	• 범죄예방을 위하여 거리에 설치된 CCTV파손 • 보행자전용길에 차량 진입 • 시설·물건 등으로 점용한 인도에 안전시설 미설치	신규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비자 이익	•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부당 수령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한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지체·삭감	신규
167	「보험업법」	소비자 이익	•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는 행위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부정한 방법으로 갹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갹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누설	신규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비자 이익	•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영리목적으로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 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 토지거래계약상 허가된 목적외 토지 이용	신규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173	「부정수표 단속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수표의 위·변조	신규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는 경우	신규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176	「비료관리법」	건강	•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 •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유해성분 최대합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자원조사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훈련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등	신규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선박소유자들의 명령수행, 협약체결업체의 명령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신규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 •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미허가 사격장의 설치 • 사격장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81	「사료관리법」	건강	•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 사료의 허위 또는 과장 표시, 표시 없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182	「사방사업법」	환경	• 사방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소비자 이익	• 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본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등	신규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직무상 비밀누설 및 비밀을 용도로 사용, 사회보장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유포·사용 • 조사별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신규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비자 이익	•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모집하는 행위	
186	「사회복지사업법」	안전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게 하는 행위 •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자로부터 받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	- 지정산림 문화 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 문화 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189	「산림보호법」	환경	산림보호구역 내 허가 받지 아니한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 행위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재종림에서의 벌채 행위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비자 이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이나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는 행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비자 이익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19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비자 이익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	
196	「산업표준화법」	소비자 이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197	「산지관리법」	환경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 -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는 행위	
198	「상표법」	소비자 이익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199	「상호저축은행법」	소비자 이익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齧食)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00	「새마을금고법」	소비자 이익	-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	
201	「생명유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건강	-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 -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외국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생물 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 획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	- 재활용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원료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신규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	신규
206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미허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 이익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과 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을 중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208	「석탄산업법」	소비자 이익	-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행위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 등	신규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	신규
210	「선박안전법」	안전	-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 선박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212	「선박직원법」	안전	•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해기사의 승무 범위 규정위반	신규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환경	•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행위/특별수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등	신규
214	「선원법」	안전	•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규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 지원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자 •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신규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고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신규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신고·인가 없이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성폭력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방해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관련 사항의 허위 보고	신규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추행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정보 또는 사생활비밀 누설	신규
219	「소금산업 진흥법」	건강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등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하는 행위 등	
221	「소방기본법」	안전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신규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223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았거나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24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이익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사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225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제작 •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자의 소음도 미수검·거짓수검	신규
2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비자 이익	• 특허단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27	「소하천정비법」	환경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229	「수도법」	환경	•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 분뇨를 버리는 행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2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목원 등록을 한 행위/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이력표시수산물인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행위	신규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건강	• 수산생물질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예방·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질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질을 수입하는 행위	
233	「수산업법」	환경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234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 이익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을 하는 경우/「수산업법」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36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검사 미실시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23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 선박선장 및 승무원 등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선박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 미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포장·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 판매 • 수입축산물의 식당·급식소 공급시 원산지 허위기재	신규
2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하천의 적절한 관리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문 조사를 하지 않거나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 조사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규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한 경우 •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등	신규
241	「습지보전법」	환경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천지역안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 · 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	•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행위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승강기 ·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 ·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행위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244	「식물방역법」	건강	•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식물을 수입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건강	•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행위	
24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 시험·검사기관에서 거짓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또는 통보 •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또는 통보 • 우수시험·검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	신규
24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	• 식품표시기준이나 영양표시 등을 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신규
248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 •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249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산 · 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	
250	「식품위생법」	건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 ·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이나 병든 동물고기,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조리 · 수입 · 진열 · 운반하는 행위 등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소비자 이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행위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253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 이익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계산을 처분·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설립요건을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신규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	•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2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 그 기관에 취업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56	「아동복지법」	안전	- 아동 학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중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57	「아동수당법」	이에 준하는 공익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신규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 아동학대로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불구·난치병에 이르게 한 행위 - 아동복지시설 원장·교사 등이 인지한 아동학대사실 미신고 - 학대피해아동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	신규
259	「아이돌봄 지원법」	소비자 이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는 행위	
260	「악취방지법」	환경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 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263	「약사법」	건강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264	「양곡관리법」	건강	- 양곡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 사행심 조장 및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거나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	- 인증받지 않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수입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68	「어선법」	안전	- 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는 행위 -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홀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	
269	「어장관리법」	환경	-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어장환경기준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270	「어촌·어항법」	환경	-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271	「에너지법」	소비자 이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지정기준 부적합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타인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 발급/에너지이용권 판매·대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규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 인증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검사대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 이익	-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 이익	-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사용하는 행위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276	「연안관리법」	환경	관리구역에서 공유수면이나 토지형질변경 등 제한된 행위를 한 경우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 연안채취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채취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27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79	「영유아보육법」	소비자 이익	•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외국선박의 통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규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매입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하는 행위 • 제한상영가 여부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282	「예금자보호법」	소비자 이익	• 법정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금융정보의 목적외 이용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 공개·누설	신규
283	「예비군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행위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신규
287	「외국환거래법」	소비자 이익	• 기준환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 환전 업무를 하는 행위	
288	「외식산업 진흥법」	소비자 이익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업자 표시를 하는 행위	
289	「우편법」	소비자 이익	•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는 경우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291	「원자력안전법」	안전	•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 •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핵연료주기시설·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안전	• 원전 건설·운영 정보를 이용한 특혜 제공 • 원자력발전기관에 대한 협력업체의 물품공급 관련 뇌물공여	신규
293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의 수입,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신규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위치정보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위치정보 누설·변조·공개 • 약관법위를 초과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규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 사업을 하는 행위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 운항한 행위 •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98	「유아교육법」	소비자 이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의무를 아니한 행위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및 생산하는 행위	
300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한 경쟁	• 무등록 대규모점포 개설 또는 대규모점포 부정 개설 등록 • 유통표준전자문서 위·변작 또는 위·변작 전자문서 사용·유통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01	「은행법」	소비자 이익	• 은행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은행을 경영함에 있어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노래연습장업자가 점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행위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 응급의료 방해 • 의료시설 파괴 및 응급의료 거부 행위	
304	「의료급여법」	건강	• 의료급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 거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 청구단체조작사	신규
305	「의료기기법」	건강	•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행위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행위 등	
307	「의료법」	건강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 · 교부 행위 •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조정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누설 •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 의료기관의 사고관련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규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신규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개별계약,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해하는 행위 등 •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한 미공지/지원금 지급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	신규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12	「인삼산업법」	건강	• 연근의 허위표시 및 판매,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판매, 제조기준 위반 • 잔류성농약의 사용 등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조직을 매매하는 행위 •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하는 행위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 이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신규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316	「임금채권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당금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신규
317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별관리 입산물의 유통 · 판매 · 통관,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거짓 통보하는 행위	
318	「입양특례법」	소비자 이익	• 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하는 행위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하는 행위	
319	「자격기본법」	소비자 이익	• 금지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의 교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행위 •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320	「자동차관리법」	안전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합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합을 시정하지 아니한 행위 •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하는 행위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22	「자연공원법」	환경	• 지정장소 외 야영행위, 오물 및 폐기물 등 투기 행위	
323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24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 · 식물 을 포획 · 채취 · 이식(移植) · 훼손하거나 고 사(枯死)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 · 밧 · 울무 · 그물 ·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 · 주입(注入)하는 행위 -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 작물을 신축 ·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는 행위	
325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 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의 사용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 건의 기준 미충족	신규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 지 아니하는 행위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 물품을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 로 반입 - 수출입 금지품목의 반입 또는 반출	신규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사용기준을 위반하 는 행위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감염된 장기의 적출 · 이식, 반대급부 목적의 장 기거래 알선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 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애영유아 어린이 집의 지정	신규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 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및 지정기준 미달	신규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교육기관의 장이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을 거 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권의의 내용의 확인 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요구	신규
33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 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하 는 경우/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어있 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33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 이 있는 경우 -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신규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충족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	신규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익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장애인 명의 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하는 경우	신규
338	「장애인복지법」	소비자 이익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339	「장애인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익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았거 나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신규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신규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 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유인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신규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정밀안전 진단, 보수·보강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어 설정된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에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하는 행위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 -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또 는 조사의 거부·기피	신규
344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 나 지급받게 함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45	「재해구호법」	안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안전	• 풍수해가 상습 발생하는 개선사업지구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개선사업지구 내에서 흙·돌 채취	신규
34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48	「저작권법」	공정한 경쟁	•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 거짓으로 저작권 등록	신규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 취득 • 온실가스 관리업체의 허위 보고 등	신규
3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 자동차폐차업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행위 • 파쇄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351	「전기공사법」	안전	•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한 시공으로 인하여 주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	
352	「전기사업법」	안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시설의 부정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	•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증대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증대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 이익	• 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에게 컴퓨터 등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 •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	신규
355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 이익	• 전기통신설비에 허위의 통신을 함	신규
356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 이익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5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358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 이익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타인제공, 누설, 목적의 사용 • 위조·변조된 접근매체의 판매, 수출입, 사용	신규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 이익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행위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직원인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거래조건의 허위정보 제공,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통계약 체결 • 수신인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구매권유 광고 송신	
361	「전자서명법」	소비자 이익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잘못된 관리 등/타인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등 • 가입자인증서 미보관/공인인증서 사용목적 위반/공인인증서 양도 등	신규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또는 도박 방조	신규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거짓·부정한 방법의 품질 인증,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인증 표시 위반,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허위 광고 등	
364	「전파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사용 승인된 주파수 이용방법 위반 • 무선설비를 이용해 국가기관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 • 무선국 설비 손괴 또는 무선통신 방해	신규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 이익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금융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등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다른 사람을 미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건강	•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 산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대혈을 채취하는 행위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폐수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생활하수 발생시설 등의 설치 •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71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에 결함에 따른 수거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372	「종자산업법」	건강	• 품종보호를 받지 않거나 품종보호출원종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허위 표시 등을 하거나 영업용광고, 거래서류, 표찰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 거짓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받지 않는 작물을 판매 · 보급하는 행위 •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는 행위 등	
373	「주거급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보장기관 임직원 등이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누설 •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신규
374	「주민투표법」	공정한 경쟁	• 투표인에게 금전 등 향응 제공/제공의 약속 등 • 투표지 제거·파괴·훼손·은닉·탈취 등	신규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외부감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 등이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376	「주차장법」	안전	• 부설주차장 미설치/용도변경/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신규
377	「주택법」	안전	• 주택등록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행위 • 주택전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행위,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378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 이익	•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사명칭 사용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 중소기업 성능을 허위로 인증받아 제품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38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공정한 경쟁	•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및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대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행위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 사용이 금지된 무기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 경계표지 제거·훼손·파괴·은폐 등	신규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취득	신규
384	「지방세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채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신규
385	「지방재정법」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신규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획득/사용정지 등 명령 위반하여 인증표시/변경인증 받지 않음/인증표시 방법 위반 등	신규
387	「지역보건법」	건강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는 행위 •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38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 관측시설을 파괴 또는 그 성능을 저하시킴	신규
38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안전	•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90	「지하수법」	환경	•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 지하안전영향평가 미실시 등/협의 이전에 공사시행/공사중지 명령 불이행/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미실시 등/안전점검 미실시 등 • 공사중지명령 불이행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392	「직업안정법」	소비자 이익	•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 성매매나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 고시금액 외 금품이나 법령을 위반한 선금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	• 사업주가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사업주의 범위만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등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 급지통고된 집회·시위 주최	신규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내는 행위	
397	「철도사업법」	소비자 이익	•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면허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	
398	「철도안전법」	안전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철도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 미실시/조치명령 불이행 • 안전조치 미실시/보수·보강 등 조치 미실시·시정명령 불이행	신규
400	「청소년 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청소년지도사가 결격사유해당/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자격증 양도·대여 • 신고인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미보고/검사거부·방해·기피/유사명칭 사용	신규
401	「청소년 보호법」	건강	•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등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익	• 설치기준 미달/사회복지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명령 위반 등 • 신고없이 시설 설치·운영/시설폐쇄·정지명령에도 사업 운영	신규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전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04	「청원경찰법」	안전	•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함 • 배치결정 없이 청원경찰 배치/승인 없이 청원경찰 임용/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 미지급/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불이행	신규
405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안전	• 기준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조 또는 그러한 시설에서 제조된 기기를 수입 • 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 미취득 또는 변경사항 미보고·허위보고	신규
4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	• 체육시설 사업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체육시설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등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폐쇄·차단하는 등 복합건축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408	「초지법」	환경	•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행위 등	
4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평하는 행위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 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 유해 발생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는 행위 등	
411	「축산법」	소비자 이익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농수산물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판매하는 행위 • 등록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	
412	「출입국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익	• 보호·일시보호·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도주목적 손괴·폭행 등/2인 이상 합동도주 등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알선/불법출입국 목적으로 여권 등을 제공·알선/불법입국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은닉·도피 또는 그 목적으로 교통수단 등 제공	신규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비자 이익	•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 미표기 • 간행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 • 출판사나 저자가 판매량을 율릴 목적으로 간행물 부당 구입	신규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치료감호자가 도주 • 의사 등이 허위진단서작성/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15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승차거부 등/부당한 운임 수수/합승/영수증발급·신용카드결제 거부	신규
417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 유출하는 행위 등	
418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 이익	• 동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 등/감청 등의 내용을 공개·누설	신규
419	「특수입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 • 위원회 직원 등의 비밀 누설 • 특수입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	신규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제11조 제2항의 시정명령 불이행/기관경고 3회 이상/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규
42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손괴 • 외출제한,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신규
422	「폐기물관리법」	환경	•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행위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않는 행위 등	
4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등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강	•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행위 •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427	「하수도법」	환경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428	「하천법」	환경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허가 없이 하천구역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댐등 설치자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	
429	「학교급식법」	건강	• 식재료의 품질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430	「학교보건법」	건강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	
43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기준 미달/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내 미개원/변경등록 없이 등록 사항 변경/교습비 부당징수/교습비 등의 조정명령 위반/명칭표시방법 위반/허위·과대광고/명령 위반/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아동학대행위 확인된 경우 등	신규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434	「한국마사회법」	공정한 경쟁	•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기수 등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 기준 미달/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시설 입소 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대한 미보고 · 허위보고 · 검사 거부 · 방해 · 기피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 수급/수급받게 함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 등록 없이 선분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 •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4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안전	• 항공·철도사고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자료제출 거부·방해/사고현장 등에의 출입 거부 등/관계 물건의 보존·제출·유치 거부·방해/법령 위반하여 미보존·이동·변경·훼손 • 사고 발생 미통보·허위 통보한 종사자	신규
438	「항공보안법」	안전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행위 등	
439	「항공사업법」	공정한 경쟁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보조금, 융자금 등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신규 (분법)
440	「항공안전법」	안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441	「항로표지법」	안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 · 관리하거나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442	「항만법」	안전	•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 · 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443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 이익	•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하거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 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른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 등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부적합 • 제한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이행 · 개선명령 불응/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정선명령 등을 거부·방해·기피	신규
445	「해사안전법」	안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하는 행위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의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는 행위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는 행위 등	
446	「해양경비법」	안전	•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방해·기피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	신규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물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등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받음/국외반출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신규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행위 •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 지하열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 · 판매하는 행위 •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소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451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 오존층과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52	「해운법」	소비자 이익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해운중개업을 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는 행위 •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 등	
453	「혈액관리법」	건강	•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장비 없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헌혈자의 신원 확인 · 건강진단, 체혈금지 대상 여부 ·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체혈을 하는 행위 •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 체혈금지대상자 ·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등	
4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 지정받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 또는 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신규

연번	법률명	분야	공익침해행위 예시	비고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 이익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사용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등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경우	신규
457	「화장품법」	건강	•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변패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 오염 물질 등으로化妆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5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익	•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사용 또는 이를 지원·권유 •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함	신규
460	「화학물질관리법」	안전	•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등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462	「환경보건법」	환경	• 환경 위해기술을 적용하거나 환경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4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위한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없이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는 행위 등	
46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는 행위 •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행위 등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 기준이나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기준 미준수	신규
466	「환자안전법」	건강	•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신규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하는 행위 • 에이즈 감염인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참고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구 분	주요업무	전화번호
보호보상 정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044-200-775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200-7754
	민관협업 및 기업 가이드 관련	044-200-7757
심사 기획과	공익신고사건 접수	044-200-7123
신고자 보호과	공익신고자 보호	044-200-7772~7780
신고자 보상과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044-200-7739~7748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웹주소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신고자 보호·보상’ 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청렴자료실 - 신고자 보호·보상’
-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http://edu.acrc.go.kr>) - 청렴교육자료 - 시청각자료